비전임교원임용규정 4-2-2

규정번호 4-2-2
제정일자 2005.5.16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21차 개정
관리부서 교무입학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10조, 제10조의 2 및 우리대학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예교수 : 우리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를 말한다.
2. 겸임교원 : 산학연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인사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3. 초빙교원 :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가로 특수한 교과의 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4. 객원교원 :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가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개정 2024.7.24.)
5. 석좌교수 : 석좌기금 또는 대학발전기금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6. 특임교수는 재정지원 참여 등 본교 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호 신설 2021.09.13.)

제3조(직급) ① 명예교수,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의 직급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객원교원의 직급은 교육, 연구 및 기타 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21.09.13.,2024.7.24.)

② 비전임교원의 직급부여는 관계법령 및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 의무와 연한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임용지침에 의한다.(신설 2024.7.24.)

제4조(임용자격) ① 비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예교수 :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대학교육기관에서 전임교원으로 25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퇴직 당시 정교수로 있던 자로서 재직 중 설립정신 구현 업적이 두드러지며 교육상,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우리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전문대학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인사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 교과목이나 학생취업 지도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격기준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다. 주당 6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3.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교과의 경우 교수자격 기준에 미달하나 당해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3년 이상 유경험자로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퇴직한 자
   나.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4. 객원교원
   가.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식견과 경력을 갖추고 인격과 덕성을 구비한 자
   나. 우리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자로서 재직 중 설립정신 구현 실적이 두드러지며 교육상·학술상 등 그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다. 기타 객원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우리대학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석좌교수
   가.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 활동을 통하여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
6.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적합한 교육 및 연구경험, 또는 실무경험과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호 신설 2021.09.13.)

제5조(임용 및 추대절차) ① 학과 소속 비전임교원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수회의 결과에 따라 학과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추대)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09.15., 2015.03.16., 2019.07.30.,2024.7.24)

② 삭제 (2019.07.30)

③ 학과 소속이 아닌 비전임교원은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추대)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 별도의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할 수 있다.(신설 2014.09.15)

④ 비전임교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 또는 추대할 때에는 추천서, 이력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겸임교원 : 겸직동의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호변경

2014.09.15)

⑤ 비전임교원은 계약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기간, 급여내역 등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임용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09.15.)

⑥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임용지침에 의한다.(신설 2016. 9. 2)

⑦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인사규정 및 우리대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호변경 2014.09.15., 2016. 9. 2)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 특성상 전문자격소지자(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강의가 필요한 경우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3년에 한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0.2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임용이 불가한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별도의 통보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

1. 재학생 감소로 인한 교원확보율 조정
2.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인한 담당교과 폐지
3. 수강 학생 미달로 인한 강좌 폐강
4. (삭제 2016. 9. 2)
5. 기타 재임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③ 명예교수는 종신으로 추대한다. 다만,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④ 비전임교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임용 및 추대절차)에 의거 해당 학과(부서)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 9. 2, 2017.07.14.,2024.7.24)

⑤ 비전임교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

⑥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

⑦ 객원교원의 임용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0.29.,2024.7.24)

⑧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별 계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항신설 2021.09.13.)

⑨ 비전임교원은 별도의 임용지침에 의한 재임용 기준 및 강의평가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제3항의 강의평가 결과 활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항번호 변경 2018.10.29.,항번호변경 및 개정 2021.09.13)

1. (삭제 2016. 9. 2)
2. (삭제 2016. 9. 2)

3. (삭제 2016. 9. 2)

제7조(강의시간) 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6시간 이상 배정할 수 있으나,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만 65세까지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대학의 전임교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강의시간 배정을 주당 1과목(1강좌) 범위내에서 만68세까지 배정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8.10.29., 2020.08.31)

② 명예교수는 총장의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별도로 총장이 정하며, 주당 1과목(1강좌) 범위내에서 퇴직 후 3년까지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객원교원의 강의시간은 6시간 이하로 배정하며, 강사료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10.29.,2024.7.24)

④ 특임교수의 강의시간과 보수는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항신설 2021.09.13.)

제8조(예우·신분) ① 비전임교원은 우리대학 학술정보원(도서관), 연구시설, 기타 교내 복지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우리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08.27., 2019.07.30)

② 비전임교원은 임기중 형의 선고, 면직사유 또는 법인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자격을 상실하거나 학부(과)의 폐지 및 관련 교과목의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07.30)

제8조2(처우)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휴직)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제9조의2(임용연령) 비전임교원은 만65세까지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만 65세가 되는 해당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4.7.24.]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 우리대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겸임교원인사관리규정, 초빙교원임용규정, 객원교수임용규정, 명예교수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6조 제1항은 2006학년도 신규임용자와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23> <생략>

<24> 비전임교원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①, 제6조③·④, 제7조②, 제8조2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5>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제7항, 제7조제3항, 제9조의2)